

□ 정관 변경(안)

구분	변경 전 (2 차 변경_2021.12.29)	변경 후 (3 차 변경_2025.10.28)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제8조의2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3항 2호 2. 보유자산 매각으로 인한 회계상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순서로 배당한다. 1.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의 연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배당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매각된 해당 보유자산의 감가상각누계금액과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잉여금의 총 감소금액 및 주식발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에서 (i)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류주식에 배당하고, (ii) 위 합산 금액에서 (i)에 따른 배당 후 잔여금액은 보통주식에 배당	[제8조의2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3항 2호 2. 보유자산 매각으로 인한 회계상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순서로 배당한다. 가. <u>이 회사의 대출이자 지급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통주주가 이 회사에 지급한</u> <u>금원(5,464,928,008원)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보통주식에 배당. 단, 2025년 10월 30일 이후의</u> <u>이자기간에 발생한 대출이자에 관한 것은 제외됨.</u> 나. <u>잔여금액 중 (i)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u> <u>종류주식에 배당하고, (ii) 위 (i)에 따른 배당 후 잔여금액은</u> <u>보통주식의 발행가액에 이를</u> <u>때까지의 금액을 보통주식에 배당</u>
	3. 보통주주가 이 회사에 지급한 대출이자에 있을 경우, 지급한 금액을 배당 4. 잔여금액 중 60%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40%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	다. <u>잔여금액 중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의 연 6.0%에 해당하는</u> <u>금액의 배당을 하지 못한</u> <u>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미 배당분을</u> <u>누적하여 배당</u> 라. 잔여금액 중 60%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40%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제8조의2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4항 ④ 회사는 보유자산의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에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한도로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다음 순서로 배당한다. 1.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의 연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배당 2. 자본준비금 전입액을 종류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본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종류주식에게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 3. 자본준비금 전입액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본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보통주식에게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	[제8조의2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4항 ④ 회사는 보유자산의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에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한도로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다음 순서로 배당한다. 1. <u>보통주식에 대하여 이 회사가</u> <u>대출이자 지급 재원을 보충하기</u> <u>위하여 보통주주가 이 회사에 지급한</u> <u>금원(5,464,928,008원)에서 본조</u> <u>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u> <u>보통주식에게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u> <u>금액을 한도로 배당</u> 2. 자본준비금 전입액을 종류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본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종류주식에게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 3. 자본준비금 전입액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본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보통주식에게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 4. <u>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의 연</u> <u>6.0%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당을 하지</u> <u>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미</u> <u>배당분을 누적하여 배당</u>

	[제8조의2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5항 ⑤ 청산 등의 사유로 회사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은 현금으로 환금한 후 회사의 모든 비용 등을 지급하고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한 적립을 마친 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며, 이 경우 잔여재산은 수 차례 나누어 분배될 수 있다.	[제8조의2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5항 ⑤ 청산 등의 사유로 회사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은 현금으로 환금한 후 회사의 모든 비용 등을 지급하고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한 적립(<u>본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2025년 10월 30일 이후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보통주의 지급 재원 보충 대여 금액에 관한 채무 변제를 포함</u>)을 마친 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며, 이 경우 잔여재산은 수 차례 나누어 분배될 수 있다.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1.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의 연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분배 2.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본조 제3항 제2호 나목과 본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분배 3.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본조 제3항 제2호 나목과 본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분배 4. 1~3항의 배분 이후에 남은 잔여재산 중 60%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40%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	1. <u>보통주식에 대하여 이 회사가 대출이자 지급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통주주가 이 회사에 지급한 금원(5,464,928,008원)에서 본조 제3항 제2호 가목과 본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분배</u> 2.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본조 제3항 제2호 나목과 본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분배 3.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본조 제3항 제2호 나목과 본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분배 4. <u>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의 연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분배</u> 5. 1~4항의 배분 이후에 남은 잔여재산 중 60%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40%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